법무법인 지평
HORIZON LAW GROUP

News Letter

2008 05 Vol. 54

Contents

01 법률칼럼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권 (박영주 변호사)

04 열려라 중국
• 외상투자기업 청산 절차에 대한 검토 (김이태 변호사)

07 생생러시아
• 러시아 내의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법률안 통과 예정 (황승화 변호사)

09 특별기고
• 「중국 에너지법(초안) 국제포럼」에 다녀와서 (정철 변호사)

12 주목! 이 판례
• 이메일 내용의 공개와 비밀누설

15 최신법령
• 300인 사업장, 2009년부터 장애인 전용장비 의무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설, 2008년 6월 22일 시행
• 경차, 유류세 10만원 환급

17 지평소식
• 법무법인 지평 뉴스레터 PDF 제공

18 업무동향
• 법무법인 지평, 무림페이퍼의 동해펄프 인수 법률자문

19 영입인사
• 최찬욱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02-6050-1600 FAX: 02-6050-1700 http://www.horizonlaw.com E-mail : master@horizonlaw.com
Copyright ⓒ HORIZON LAW GROUP All rights Reserved.

(법률칼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권

법무법인 지평 박영주 변호사

우리 국민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비율이 60%를 넘는다. 대도시의 경우는 그 비율이 더 높다. 더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은 드문 일이 아니다.

공동주택은 물론 상가 등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다.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위 법 제1조), 그 용도에 따라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나누고(위 법 제3조), 이를 관리, 보존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들로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강제한다(위 법 제23조). 원칙적으로 관리단은 공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 개인이 청구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관리단의 권한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관리단과 구별하여야 할 것이 입주자대표회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둔다(주택법 제43조, 시행령 제50조).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과반수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과는 '별개의 법인 아닌 사단'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 4478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므로, 정작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은 아무런 관리권한이 없게 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은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가질 뿐이므로, 구분소유자의 고유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또는 그와 동시에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여부다.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공유부분뿐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

하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참조), 비록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6.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7616 판결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참조)"고 판시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구분소유자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지만 하급심 재판부들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추가로 발급받고, 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절차가 한가지 추가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하급심의 태도는 분쟁의 간이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위 판례에서 밝힌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물론, 소송신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신탁법 제7조에 위배되는 편법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에 순수하지 않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공유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모두 양도받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여기에 더 나아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최대 10년이 지나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하자발생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하였다.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

한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 법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와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아울러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본문이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점까지 고려할 때,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련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40430 판결). 결국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받은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할 것이 아니고,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71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가 준공되어 사용검사를 받은 후 최소 11년(1년차 하자의 경우)에서 최대 20년(10년차 하자의 경우)까지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셈이다.

위 판결을 보면서 드는 감상이 적지 않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고 밝힌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편법을 허용하면서도, 그러한 편법을 통한 권리 행사까지도 법원칙이라는 명분하에 최대한 보장하도록 명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더 이상 약하지도, 무지하지도 않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도 일관된 법원칙과 규정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HLG

(열려라 중국)

외상투자기업 청산 절차에 대한 검토

법무법인 지평 김이태 변호사

청산기업의 증가와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의 폐지

최근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우대세율 적용의 폐지, 가공무역 금지 품목의 확대, 새로운 노동계약법의 시행, 토지사용세 징수, 환경 관련 규제의 강화 등 중국에서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청산을 하는 외상투자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청산 절차 등을 이유로 적법한 청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철수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동성 청도에서 무단철수를 하는 한국기업도 2004년 18개에서 2007년 9월 43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청산 관련 법률의 일관성 부족과 공무원의 업무처리 지연 등이 무단철수를 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지만,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철수는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중국 현지에 남아 있는 다른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청산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외상투자기업의 청산 절차에 적용되던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이하 '청산방법')이 2008년 1월 15일 폐지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이하 '회사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산방법이 폐지된 이후 아직 오랜 시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기타 외상투자기업 관련 근거 법령의 청산 관련 규정들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외상투자기업의 청산 절차 관련 법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청산을 준비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은 구체적인 청산 절차와 관련하여 사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 추후 제정되는 관련 법규 또는 지침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회사법에 있는 청산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외상투자기업의 청산 절차 및 청산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의 청산 절차

(1) 청산 사유

회사법상 회사는 ①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었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

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가 회사 해산을 결의한 경우, ③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리로 인하여 해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법에 따라 영업집조가 말소되거나 회사 폐쇄 또는 철수 명령을 받은 경우, ⑤ 인민법원이 회사법 제183조에 따라 주주가 제기한 해산청구의 소에 따라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 법적 절차에 따라 청산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181조).

외상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각 근거 법률에도 해산 및 청산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90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제48조,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72조), 이러한 근거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청산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산 신청 및 비준

외상투자기업의 각 근거 법률에는 회사가 일정한 사유로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산 신청서를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90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제48조,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73조).

(3) 청산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회사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위 기한 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청산위원회의 구성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법 제184조).

청산위원회의 권한은 ① 회사의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작성, ② 채권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③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미완료업무 처리, ④ 체납세금 및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납부, ⑤ 채권·채무의 정리, ⑥ 채무 상환 후 잔여재산의 처리, ⑦ 회사를 대표하여 민사소송에 참여 등입니다(회사법 제185조). 한편, 합자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의 청산위원회의 권한은 각 근거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93조,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75조).

(4) 채권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청산위원회는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45일 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186조).[1]

(5) 청산방안의 제정 및 분배

청산위원회는 회사재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청산방안을 제정하여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회사법 제187조).

[1] 이와 관련하여 청산방법에는 청산위원회는 성립일로부터 60일 내에 최소 2회 이상 전국일간지 1종과 당지 성급 또는 시급 신문 1종에 공고문을 개제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1차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청산방법 제17조, 제18조).

청산위원회는 회사재산으로 청산비용, 근로자임금, 사회보험료 및 법정보상금을 각 지급하고, 미납세금을 납부한 후 기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 등에게 분배합니다.

청산위원회가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에 회사재산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기업파산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188조).

(6) 청산보고서 작성 및 등기 말소

청산위원회는 청산이 종료되면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고, 관할 등기기관에 보고하여 회사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며, 회사의 종결을 공고하여야 합니다(회사법 제189조).

청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

외상투자기업이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철수하는 경우에는 중국 형법 제224조 제4항의 사기죄[2], 형법 제159조의 허위출자·출자도피죄[3], 형법 제154조의 밀수죄[4] 등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각 지방법원은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기업의 채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업투자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5] 또한 지식경제부는 2008년 2월 19일자 "중국진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한계기업의 청산지원대책"에서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무단철수 기업인에 대한 사법적 제재 방안에 관한 법률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에 투자한 한국 기업인들이 이러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책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청산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HLG

[2] 미변제채무가 존재하는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 해산을 시도하는 경우 등

[3] 미변제채무가 존재하면서 허위출자(가장납입)를 하거나 출자금을 빼돌리는 경우 등

[4] 감면 또는 면세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중국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감면 받은 세금을 보충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

[5]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기업의 해산청산에 관한 사법적 해석"을 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투자자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생 러시아)

러시아 내의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법률안 통과 예정

법무법인 지평 황승화 변호사

러시아 연방의회(the State Duma)는 최근 러시아 내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입법안 초안을 채택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의 중대한 변경 없이 정식 법률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한다. 입법안의 명칭은 '연방의 안보와 안전보장에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절차에 관하여(On Procedures for Making Foreign Investments into Companies Having Strategic Significance for the Defense and Security of the State)'이다.

여기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회사의 예로는 군수산업, 핵 관련 및 항공 관련 분야 등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의할 만한 분야로는 지질학적 탐사 및 심토(Subsoil)에서 지하광물을 생산하는 분야 역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 내에서 지하광물자원을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입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러시아 연방이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제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러시아가 당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기업을 외국인투자자가 지배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3개월을 한도로 연장될 수 있다고 한다.

입법안은 어떠한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당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i) 당해 기업의 지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유일한 업무집행기관을 선임하거나 집단적 업무집행기관의 10% 이상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ii) 외국인투자자가 이미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당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iii) 외국인투자자가 당해 기업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iv) 기타 외국인투자자가 당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의할 것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이러한 제한은 러시아 연방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인데, 예를 들

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기업의 경영지배를 한국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도하는 경우 위 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입법안은 그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소급효를 가지지는 않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LG

(특별기고)

「중국 에너지법(초안) 국제포럼」에 다녀와서

법무법인 지평 정철 변호사

지난 1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는 중국 국무원 주최로 중국 에너지법에 대한 국제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은 2007년 말 중국 에너지판공실에서 발표한 중국 에너지법(초안)에 관한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초 포럼은 상하이의 화둥이공대학 주최로 기획 되었으나, 포럼의 의제 등을 검토한 중국 국무원이 스스로 주최자로 나서면서 포럼의 지위가 격상되었다.

중국은 2006년 1월경부터 정부의 15개 유관부서로 꾸려진 에너지법초안실무팀을 발족시켜 2년에 가까운 연구 끝에 에너지법(초안)을 발표하였다. 에너지법(초안)은 명칭 그대로 대외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상정될 최종안을 작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성격을 띤다. 이번 포럼은 의견 수렴의 최종과정으로서, 향후 실무팀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쳐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상정 될 예정이다. 에너지법(초안)은 총 15장 140개에 이르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또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서 에너지 가격정책 및 세제, 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 에너지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명실상부한 중국 에너지 문제에 관한 기본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몇 년간 10%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대규모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중국은 국제자원시장에서 큰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격적인 자원 확보 움직임은 국제 원자재 시장을 출렁이게 하기도 한다. 기존에 에너지관련 법령으로 전력법, 석탄법, 에너지절약법 및 재생가능에너지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개별 입법의 한계에서 오는 통합 관리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에너지 문제를 관리할 정부 부서의 체계도 통합되지 않았다. 중국의 에너지법 제정은 이러한 현실적이다 못해 절실한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포럼은 크게 1)총론 및 전체 체계 2) 에너지 관리감독 체계 3) 에너지 전략 및 계획 체계 4)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공급서비스 5) 에너지 절약, 배출 감소 및 기후변호 6) 에너지 비축, 응급상황 대처 및 에너지 안보 7) 에너지 재정, 세제 및 가격정책 8) 에너지 기술 정책 및 국제협력 등 8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포럼의 참가자들 면면을 보면 중국의 에너지법 체계화에 대한 열망과 세계 각국의 중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중국 국내 참가자들을 제외하고 국외 발표자들의 소속기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에너지부, 유럽연합 교통에너지부서 및 과학기술환경부서, 유럽상공회의소, 국제에너지기구 (IEA), 기후변화기금, 캐나다 로펌인 Blakes, Cassels & Graydon LLP, 민간기구인 Regulatory Assistance Project(RAP) 및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인도 델리전기규제위원회, 독일 국영기업인 Germany Technology Cooperation Company, 컨설팅회사인 McKinsey, 에너지기업인 GE 및 Dow Corning. 이처럼 유럽, 미주 등 지역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기고나, 에너지 환경관련 NGO, 다국적 기업 등 성격이 다양한 조직의 전문가들이 에너지법(초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외에도 정식 발표자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한 다수의 기관들이 있었다.

초안작업을 담당했던 중국 관리와 학자들이 열린 시각으로 서구 전문가들의 지적을 참고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국의 에너지 문제가 국제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국내법 개정에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도를 한 것은 분명 특징적인 것이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하고, 이를 에너지법에 대한 수정의견에 담아냈다는 점이다. 다국적기업은 그들대로 에너지관련 NGO들은 그들대로 중국의 에너지와 환경보호 등을 강조하며 정책에 압박을 가하고자 하고, 정부 기구들은 해당 국가의 중국 시장 진입 효과를 고려하는 입장을 발표 내용에 역력히 드러내었다.

필자의 발표는 한국의 전력시장 개편과 중단 등의 경험과 그 과정 속에 치열하게 전개된 찬반논의에 비추어 중국 전력시장의 시장화 원리 도입 시에 참고할 점들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는데, 한국 에너지기업이나 에너지 관련 기구 및 부처에서 포럼에 참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둘째 날 회의를 마친 후 식사를 함께 한 국가에너지주도그룹의 허용지앤 국장에 따르면 이번 포럼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없다고 한다.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상정이 도면 통상적으로 9개월의 심의기간을 거쳐서 최정 법안으로 확정이 될 것이다. 허국장은 에너지법이 제정되면 바로 에너지원별 개별입법 작업을 개시하여 에너지법 제정 후 약 6개월 정도면 법안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중국 에너지법이 통과되면 국무원 에너지부서를 정점으로 한 전국적인 에너지 관리체계가 정비되고, 가격정책, 세제, 에너지 안보 관련 정책에 일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할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법적 허용성에 대한 전제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경 돌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에너지시장에 관심을 가진 기업과 기관이라면 중국 에너지법의 입법추이는 반드시 선행 연구되어야 할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에너지 관련 기업 및 기관도 중국의 에너지 정책이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사전에 중국의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HLG

법무법인 지평 정철 변호사는 이번 포럼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정식발표자로 초청되어 <중국의 전력시장 개편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00년대 들어 한국에서 진행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이를 둘러싼 논의를 소개하였습니다. '「중국 에너지법(초안) 국제포럼」에 다녀와서' 칼럼은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에서 발행하는 2008년 4월호 '친디아 저널(Chindia Journal) 지상중계'에 게재 되었습니다.

(주목 이 판례!)

이메일 내용의 공개와 비밀누설

- 대상판결: 대법원 2008년 4월 24일 선고 2006도 8644 판결
- 사 건 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사건의 개요

A주식회사의 기술부차장인 B는 C(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엔진부품에 대한 보조발전기 정비사업권 및 연구개발 지원금을 D주식회사에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 을은 위 이메일의 내용을 확보한 피고인 갑으로부터 위 이메일의 출력물 사본(이하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넘겨받은 후, 자신이 D주식회사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지 않았다는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A주식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2조 제6호는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갑과 피고인 을은 모두 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판결은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 2266 판결)은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피고인 을에 대하여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갑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해석

대법원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 7309 판결 등).

한편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급여번호와 비밀번호를 무단 이용하여 학교법인의 정보통신망에 보관 중인 급여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한 다음, 타인의 이름 및 소속 등을 일부 삭제하여 비밀보유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 후 이를 계속 중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49조에 규정된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 6389 판결).

3.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내용

(1) 원심법원이 무죄판결을 한 이유

원심판결은 피고인 을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로 먼저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넘겨받아 A주식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 사본'은 법 제62조 제6호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판결은 "위 '이메일'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었던 것이라 하여 위 '이메일 출력물 사본'이 법 제62조 제6호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 을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심판결의 취지는 "이메일 자체가 아닌 그 출력물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또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원심판단과 같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대법원은 "공소사실은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을 위 징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중략) 피해자의 비밀인 위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이메일 출력물이 법 제62조 제6호, 제49조 소정의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을의 행위가 위 규정에 정해진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과 동시에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 중 피고인 을에 대한 부분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암묵적으로 원심판결의 주된 근거는 "피고인 을은 피해자의 이메일을 직접 출력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취득한 '출력물 사본'을 제출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위 규정 소정의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 또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갑의 행위 태양이 피고인 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갑에 대한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으

로부터 직접 취득하지 않고 제3자를 취득한 자라 하더라도 그 정을 알면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이를 알려준 경우에는 위 규정 소정의 타인의 비밀 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한 대상판결의 취지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과 '타인의 비밀 자체'를 혼동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 정보통신망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타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거나, 또는 타인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나아가 그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할 기회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누군가가 타인의 이메일 내용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법령)

1. 300인 사업장, 2009년부터 장애인 전용 장비 의무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66호)

내년 2009년 4월 11일부터 상시 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이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장애인의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재활·치료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11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13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국·공·사립 특수학교와 장애전담보육시설은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은 2011년부터, 사립유치원과 평생교육원은 2013년부터 장애학생을 위한 이동용 보장구 대여나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국·공립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에도 경사로나 음료대, 탈의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인권보장 의식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설, 2008년 6월 22일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775호)

작년 말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기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기 30일 동안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되어 여성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경차, 유류세 10만원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774호)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 10만원을 한도로 환급해줍니다. 시행령은 경차 유류세 환급에 따른 대상 자동차 요건, 연간 환급 한도액(연 10만원),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절차 등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대형차 소유자 등 부유층에 주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저소득층도 실질적으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입도록 하고,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LG

(지평뉴스)

법무법인 지평 뉴스레터 PDF 제공

법무법인 지평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54회(2008년 5월) 뉴스레터부터 E-mail 형태의 뉴스레터뿐 아니라 PDF 형태의 뉴스레터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PDF 형태의 뉴스레터는 E-mail 형태의 뉴스레터 전문을 별도 서식에 옮긴 형태로, 뉴스레터 메일 하단의 '법무법인 지평 뉴스레터 PDF 다운로드 배너'를 클릭하시면 PC에 바로 저장이 가능하며, 지평 홈페이지 '지평소식/자료>뉴스레터'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PDF 뉴스레터를 PC에 다운로드 하였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오프라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메일 하단에 있는 PDF 다운로드 배너)

뉴스레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master@horizonlaw.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업무동향)

법무법인 지평, 무림페이퍼의 동해펄프 인수 법률자문

4월 22일 무림페이퍼컨소시엄이 국내 유일의 펄프회사인 동해펄프 주식 2100만주를 3,09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회사파트는 위 건과 관련하여 무림페이퍼컨소시엄을 대리하여 정리회사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문기사]

- 한국경제 - 무림페이퍼, 동해펄프 인수... 3095억에 지분 33.7%
- 서울경제 - 무림페이퍼, 동해펄프 인수

[담당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정철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HLG

(영입인사)

최찬욱 변호사

□학력사항

- 덕원고등학교 졸업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미국 Columbia University law school 통상법 세미나 과정 이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과정 이수(통합도산법)
-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 교육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디벨로퍼 과정 이수
- 한국도시개발포럼 부동산개발전문가과정 이수

□경력사항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전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 현 도시개발포럼 부동산개발전문가과정 강사
- 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외래교수
-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현 교통방송 자문변호사 겸 생활법률 코너 진행자
- 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인사말

금번 지평에 입사하여 건설부동산팀에서 일하게 된 최찬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 신우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 파산 분야 담당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를 계속하던 중 국내 제일의 부동산공법연구단체인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에서 개설한 부동산개발전문가과정의 강사로 부동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였고, 연기금으로서 국내 최대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개발사업자문, 정비사업조합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송무등을 통해 부동산개발쪽의 업무를 지속해 왔습니다.

파산분야로서는 통합도산법이 발효된 2006. 경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관재인으로 30건 이상 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파산관재업무를 지속해 왔습니다.

두 가지 전문분야에서 여러 사건을 접할 기회가 많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자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진정한 노력은 결과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고객 여러분의 요청에 좋은 결과로 부응하겠습니다. 지평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충고 부탁 드립니다. HLG